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75 호 2026. 8. 13.(목)

조 레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4호[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7호[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8호[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9호[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0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7호[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6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8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33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48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0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2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24호[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69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25호[울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79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0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52)]····· 8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72호[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8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57호[2026년 2분기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임대조건) 공고].....	8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58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49)].....	8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72호[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8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5호[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9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6호[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9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7호[공시송달공고].....	94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4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조례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조례·규칙과 그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행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 ①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한다.

② 규제사무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사무의 공표)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심사 등)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해야 하며,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해당 입법안에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를 받은 경우, 규제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및 규제 수단의 타당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검토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 시행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7. 그 밖에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구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

우에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해야 한다. 다만,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규제의 폐지·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규제정비 요청 및 입증책임)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조례등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정비 요청을 받으면 구청장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③ 규제정비 요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정비·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회피)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 2명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지방규제신고센터)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능단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도 운영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금) ① 구청장은 규제 개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조례등을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5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전부 개정하여 규제 등록, 규제영향분석, 규제정비 및 의견제출 등 규제사무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행정규제 혁신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나.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

다. 규제의 등록, 규제사무의 공표, 심사,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제7조)

라. 규제의 재검토, 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제10조)

마.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 개정(제11조~제16조)

바. 지방규제신고센터 설치 및 홍보물품 제공,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제17조~제19조)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를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하급행정기관”을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선구매”를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우선구매)”를 “(지역상품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

선구매”를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내 상공인 우선구매 규정이 지닌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및 차별적 규제를 정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 이행
-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으로 수정

(제명, 제1조, 제5조, 제7조)

나. 적용대상 관련 조례와 명칭 통일(제4조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단체에게 장비·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역치안 활동 유관 기관·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치안협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인 범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의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신설(제12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공공기반시설”을 “공공 기반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울산중부지사장”을 “울산중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 추가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제12조제3항)
- 나. 간사 지정 직위 조정(제12조제6항)
- 다.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운영기준 정비(제13조제2항)
- 라. 조문 및 용어 정비(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8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
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
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여야”를 “촉진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구매하여야”를 “구매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개하여야”를 “전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28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개정(2025. 11. 11.)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저탄소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구체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제8조 및 제10조)
- 나.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제27조제4항제3호)
-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8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고3 수험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추가(제5조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9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구청장은 다음”으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를 “자문 및 심의를”로,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북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을 “국장, 담당 부서장 및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원”을 “의원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심의

제5조의2제5항 중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를 “공연 및 전시 업무 팀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를 “위촉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20퍼센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관장은”을 “구청장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검인을 아니할”을 “검인하지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 (제6조~제20조)
-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제5조)
- 다.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제12조)
- 라.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 마.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제14조)
- 바.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7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
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
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경제문화국장, 공단 총괄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경영·회계·재무·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기준)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정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회계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절차)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해야 하며, 접수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가 공단이 책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건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 평균점수의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추천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인의 자격) ① 회계감사인은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3조(회계감사계약)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 공단이 회계감사계약 해지 및 회계감사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 산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

※ 참석위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 점수 제외하지 않음

○ 제외기준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수행 계획 (65)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합 계		1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감사인 선임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위임사항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제1조)
- 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제5조)
-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지급 (제6조~제8조)
- 라. 회계감사인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선임(제9조~제11조)
- 마. 회계감사인의 자격 및 회계감사계약(제12조 및 제13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

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규제심사(이하 “규제심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조례등의 입법안
2. 규제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규제 신설·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심사 절차에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포함해야 한다.

제6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보완해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

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규제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소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신설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나.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인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앞)

규제등록서

① 등록번호				② 등록일자				
③ 규제사무명								
④ 소관 부서				⑤ 소관부처				
⑥ 근 거 법 령	상 위 법							
	시 행 령							
	시행규칙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고시 등							
⑦ 부문별				⑧ 유형별				
⑨ 사무특성			⑩ 공포일			⑪ 등록사유		
⑫ 규제시행일 /폐지일				⑬ 재검토기한				
⑭ 규제재검토								
⑮ 규제 목적								
⑯ 규제 내용								
⑰등록 이후 변동 경과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1쪽 뒤)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 ① **등록번호**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
- ② **등록일자** :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 ③ **규제사무명** :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무명을 그대로 기재
- ④ **담당부서** :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소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 ⑤ **소관부처** :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 ⑥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 ⑦ **부문별** :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
 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 ⑧ **유형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 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쪽)

- ⑨ **사무특성** :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중 기재
- ⑩ **공포일** : 관련 조례등의 공포일 기재
- ⑪ **등록 사유** :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⑫ **규제시행일/폐지일** :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또는 폐지일 기재
 -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⑬ **존속기한** : 규제 존속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 ⑭ **규제재검토** : 최종 규제 재검토 실시 일자 및 재검토 결과 기재
- ⑮ **규제 목적** : 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을 기재
- ⑯ **규제 내용** :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규제가 등록된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규제정비계획서

조례·규칙명 :

분야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조항	규제 내용		재검토 기한	개선 유형	사유
				종전	변경			

※ 작성요령

- 분야 : 울산광역시 북구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규제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
- 재검토 기한 : 규제의 재검토 기한 기재
- 개선 유형 :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완화” 또는 “폐지”라고 기재,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재
- 사유 : 정비 사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1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규제조문			
3. 유형		4. 입법예고	
5. 소관부서 및 책임자			
6. 근거법령 등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8. 규제 내용			
9.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10. 규제 목표			
11. 비용·편익분석			
12. 영향평가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13. 일몰설정여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여부	재검토기한(주기)	
		0000.00.00~0000.00.00(0년)	
	재검토기한 연장여부	재검토기한 설정 조문	
14. 우선허용·사 후규제 적용여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지)]

(1쪽 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라. 규제 목표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

라. 비용·편익 분석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순응도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경과

나. 향후 평가계획

다. 종합결론

(2쪽 앞)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I. 분석 대상 규제 개요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무의 명칭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 - 강화 및 재검토기한 연장은 기존 등록사무명과 연계하여 작성
2. 규제조문	규제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등의 명칭과 조문(번호)
3. 유형	규제의 신설, 기존규제의 강화, 재검토기한 연장인지를 구분
4. 입법예고	해당 규제가 입법예고 되는 기간을 입력
5. 소관부서 및 책임자	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 팀장급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
6. 근거법령 등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등의 명칭과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포함)
7. 추진 배경 및 규제 필요성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경위를 요약
8. 규제 내용	- 신설규제 : 신설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 - 강화·재검토기한 연장 : 현행규제의 내용과 변경하려는 내용
8. 규제 목표	규제도입을 통해 문제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
10.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피규제자 이외 이해관계자 : 기업 및 소상공인, 일반국민으로 구분 - 관련 정부기관 : 해당규제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기타 관련기관
11. 비용·편익분석	규제의 영향 중 정량적·정성적 비용·편익분석 결과 요약표
12. 영향평가여부	기술·경쟁·중소기업 영향평가 해당 여부 표기
13. 일몰설정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규제존속기한 설정여부 표기
14. 우선허용·사후규 제 적용여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 여부를 표기

(2쪽 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 선택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술
나.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복수의 규제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상세한 근거와 함께 제시
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하고 조치결과를 제시
라. 규제 목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정책의도를 집약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추진배경'에서 검토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결과를 의미
2. 규제의 적정성	
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규제대안이 규제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 검토하여 기술
나.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기술영향평가 : 기술규제 포함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작성 - 경쟁영향평가 : 경쟁제한규제 포함여부 작성 - 중소기업 영향평가 : 피규제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작성
다. 국내 유사 입법사례	유사한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라. 비용·편익 분석	피규제자 집단 및 피규제자 이외에 집단간 영향 및 규제영향 분석
3. 규제의 실효성	
가. 규제의 준용도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으로 피규제자가 처한 현실을 기준으로 볼 때 규제준수의 수월성을 정성적으로 검토
나. 규제의 집행 가능성	규제집행 담당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한 행정적 집행가능성 및 규제를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여건 등 재정적 집행가능성을 검토
4.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가. 추진 경과	내부검토 과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경과 기술
나. 향후 평가계획	규제집행 이후 규제의 존속기한 등에 근거하여 사후평가계획 기술
다. 종합결론	규제영향분석서 전체내용의 종합적인 결론 제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건의 제목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검토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중장기 검토	☐ 불수용
	<규제사무명> ○ <근거규정>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규제관리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나. 규제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다. 규제영향분석과 재검토, 규제정비 요청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제7조~제9조)
- 라. 중요규제 판단 기준(별표 1)
- 마. 규제등록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관련 서식(별지 제1호~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담당부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업무계획	연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예산	연1 회	의회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결산	연1 회	결산승인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금	연1 회	의회의결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부채현황	연1 회	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상환계획	연1 회	결산종료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연1 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4.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평가결과	연2 회	8월, 익년2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연1 회	익년 1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6.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1 회	익년 1월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 정보	세부 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 형태	담당부서
7. 구에서 결정 징수하는 수수료의 조정 결과	수수료 등의 조정 결과	수 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세무2과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수 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안전총괄과 건설과
9.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계약	수 시	계약체결 이후	정보통신망	회계과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행정심판 재결결과	수 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획예산실
11. 부서별 과장급 이상의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업무추진비	월 1 회	월초	정보통신망	해당부서
12.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수질검사	분 기	분기	정보통신망	환경위생과
13. 공청회 결과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 시	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해당부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개하는 세부사업별 행정정보를 현행 행정환경 및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개선하고, 담당부서 항목을 신설하여 행정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의 현행화 및 담당부서 항목 신설(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진**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70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
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
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20일”을 “30일”로, “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관장”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을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으로,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를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앞)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재	담당자	담당	부서장
(√표시)회원종류 ☐ 일반 ☐ 부부 ☐ 가족 ☐ 학생 ☐ 단체 회비금액 :							
개 인 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단 체 회 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회 원 접 수 증

성명(단체명)		유효기간			
주 소					
회비납부액		회원수		구좌수	
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1호서식)

(1쪽 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 · 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집전화)	
소속단체 (직장/학교)			
자격·면허증			
자원봉사 활동 경력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가능 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쪽 앞)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집전화		E-mail	
	휴대전화		※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공연·전시 행사의 명칭				
공연·전시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부터 : 년 월 일() 시 까지 : 년 월 일()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분 소요		
입 장 료		☐ 무료(초대) : ☐ 유료 :	출연·예상 참석 인원	출연자 : 관람객 :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 공연장 ☐ 전시실 ☐ 야외공연장 ☐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감면사유		☐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1쪽 뒤)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써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2쪽 앞)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4. 수집 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 1항

5.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여부를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신청서

- 1. 사용자 주소 :
- 2. 성명(단체명) :
- 3. 변경신청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 타				
변경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쪽 앞)

(허가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

(1쪽 뒤)

허 가 조 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등 사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조례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1쪽 앞)

수 강 신 청 서

제 기

접수번호		구 분	☐ 기존회원 ☐ 복구민 ☐ 신규	강좌명		
신 청 자	성 명				수강료	
	주 소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집 전 화					
	휴대전화	※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접 수 증	
기 수	
강좌명	
성 명	
수강변경 및 취소 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9호서식)

(1쪽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대상	사용자 (신청자)		공연·전시 명칭	
	사용신청일		사용신청기간	~
실제사용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반 환 계 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검인 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공연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회)
6. 검인매수 :
7.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 신청합니다.

일월년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주 소 :

성 명 :

위의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제○기 ○○반 ○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용신청서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제3조~제9조)
- 나. 정기대관 경합에 따른 사용자 결정기준 신설 (제5조)
- 다.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전자우편 기재란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2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본청의 실·과, 의회사무과”를 “본청 및 의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구 직속기관

다. 구 사업소

라.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제4조관련)

대 상 사 업	범 위
1. 건설공사(전기·소방·통신공사 등)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2.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3. 건설공사 설계변경(전기·소방·통신공사 등)	◦ 2천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 시
4. 물품구매·제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제2항 관련)

공 사 명		요청부서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국비 %, 시비 %, 구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국비 %, 시비 %, 구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외주위탁비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표자 : (전화번호 :)	
발주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제6조제2항관련)

건 명		요청부서	
산출금액	원(예산확보현황 : 세부사업/편성목/예산액) (국비 %, 시비 %, 구비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타사항			
발주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기초산출(원가계산)금액 개요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원가계산서) 1부 2.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제6조제2항관련)

건 명			
산출금액	원 (예산확보현황: 세부사업/편성목/예산액) (국비 %, 시비 %, 구비 %)	계약방법	
기타사항			
요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 1. 규 격 : 절(mm×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단면 도, 내지 단면 도 양면 도, 내지 양면 도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계약) 심사요청서(제6조제2항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공사(사업명)			
공사(사업) 개 요	당초		
	변경		
공사(사업,용역) 위 치			
공사(사업,용역)비	당초	총공사비 : 도급액 : 관급액 : (국비 %, 시비 %, 구비 %)	
	변경	총공사비 : 도급액 : 관급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착공(착수)일			
준 공 일			
도급자(원설계자)			
업무담당(감독)자		직 : 성명 : 연락처 :	
감 리 자		• 업체명 : • 책임감리자 : • 연락처 :	
주변경사유			
◦ 첨부서류 1. 변경 설계도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결과 통보서(제8조제1항 관련)

☐ 건명 :

순번	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고

【별지 제7호서식】

계약(설계변경)심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제8조제3항 관련)

☐ 건명 :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소요예산(천원)			비고
			당초	조정	증감	

※ 증감액 산정시 공사비는 원가계산을 반영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실무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부서 명칭 신설 및 정비(제2조)

- (현행) 보건소,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개정) 구 직속기관, 구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나. 계약심사 대상사업 근거법령 정비(제3조)

- (현행) 문화재보호법,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다.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별지 1)

- (현행) ○○만원 → (개정) “추정금액” ○○만

울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씨 (인)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관 및 부서를”을 “기관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본청(의회사무과 포함)”을 “본청 및 의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속기관,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구 사업소

라.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 중 “본청(의회사무과 포함) 및”을 “구 본청 및 의회,”로,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구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일상감사 대상업무 기준 용어를 계약 관련 법령 및 실무 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적용 대상 기관 명칭 정비 및 신설(제2조, 제3조)

- (현행) 구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개정) 구 직속기관, 구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7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신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3*		
점 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공연	점 용 면 적	○ 33.0㎡
점 용 기 간	○ 2026. 10. 18.(일) 14:00 ~ 17:0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 - 172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창평동 79-1	중원지1길 126	2026. 8. 12.	2026. 8. 13.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중원지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호계동 774-2	호계로 251	2026. 8. 12.	2026. 8. 13.	2001. 3. 22.	법정동인 호계동 명칭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가대동 293	농서로 679	2026. 8. 12.	2026. 8. 13.	2009. 4. 9.	옛 지명인 농서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진장명춘지구 45B 6L	진장11길 32	2026. 8. 12.	2026. 8. 13.	2004. 1. 5.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 부여함

○ 도로명주소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농서로 679	2025. 11. 14.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호계로 251	2026. 8. 7.	건물멸실	철거 후 신축
제내3길 7-5	2026. 8. 10.	건물멸실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
새장터6길 5	2026. 8. 11.	건물멸실	노후건축물 철거
진장11길 12	2026. 8. 12.	건물멸실	건축물 철거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57호

임 대 조 건 신 고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우리구 2026년 2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 신고 현황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9. 30.
3. 공고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 5항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역 : 불임 임대차계약 신고현황(엑셀파일)참고 “개인정보 없음”

임대차계약신고 처리현황(2026. 2분기)

연번	처리일자	임대주택 주소	임대료 연상률	임대시작일	임대종료일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2026062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5 302호실 (양정동)	3.92%	20260515	20270514	10,000,000	460,000
2	20260626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20 401호 (화봉동)	4.8%	20260701	20280630	20,000,000	580,000
3	20260626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20 502호 (화봉동)	4.81%	20260615	20270614	10,000,000	670,000
4	20260626	울산광역시 북구 사정2길 20 301호 (화봉동)	4.92%	20260425	20270424	20,000,000	725,000
5	20260617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97-8 1310호 (매곡동, 청림온하수타운)	3.08%	20261031	20281030	20,000,000	260,000
6	20260617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38 301호 301-302실 (산하동)	4.09%	20260606	20270605	1,500,000	360,000
7	2026061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2 205실 (호계동)	4.12%	20260615	20261214	2,000,000	245,000
8	202606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8 진장명chon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201호 (진장동)	3.48%	20260626	20270625	2,000,000	290,000
9	202606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8 진장명chon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602호 (진장동)	0%	20260623	20270622	10,000,000	300,000
10	202606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8 진장명chon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502호 (진장동)	-0.89%	20260526	20270525	5,000,000	260,000
11	202606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8 진장명chon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205호 (진장동)	0%	20260601	20270531	1,000,000	300,000
12	2026060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8 진장명chon토지구획정리지구 58 6 604호 (진장동)	1.35%	20260419	20270418	3,000,000	270,000
13	2026060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3 202실 (호계동)	4.95%	20260504	20270503	3,000,000	259,000
14	20260602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0길 11 302실 (화봉동)	4.15%	20260313	20270313	3,000,000	240,000
15	2026052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14 305실 (호계동)	0%	20260505	20270504	3,000,000	300,000
16	20260521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8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531	20280530	90,000,000	
17	20260521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630	20280629	90,000,000	
18	20260521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2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502	20280501	90,000,000	
19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309호 9호실 (양정동)	0%	20260420	20261019	2,000,000	320,000
20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38 301호 301-304실 (산하동)	0%	20260423	20270422	3,000,000	360,000
21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38 301호 301-306실 (산하동)	2.77%	20260225	20270224	3,000,000	360,000
22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길 38 301호 301-303실 (산하동)	0%	20260511	20261110	3,000,000	360,000
23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10호 (양정동)	0%	20260412	20270411	2,000,000	320,000
24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408호 8호실 (양정동)	0%	20260409	20270408	2,000,000	320,000
25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404호 4호실 (양정동)	0%	20260210	20280209	5,000,000	250,000
26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401호 1호실 (양정동)	0%	20260502	20280501	2,000,000	320,000
27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307호 7호실 (양정동)	0%	20260416	20270415	2,000,000	320,000
28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106실 (양정동)	0%	20260310	20270309	1,000,000	270,000
29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03실 (양정동)	0%	20260325	20270324	1,000,000	270,000
30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11실 (양정동)	0%	20260411	20270410	2,000,000	320,000
31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07실 (양정동)	0%	20260411	20270410	2,000,000	320,000
32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05실 (양정동)	0%	20260226	20270225	2,000,000	320,000
33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107실 (양정동)	0%	20260207	20260806	1,000,000	270,000
34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02실 (양정동)	0%	20260412	20270411	1,000,000	270,000
35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201실 (양정동)	0%	20260420	20261019	1,000,000	270,000
36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491 309호 9호실 (양정동)	0%	20260207	20260806	2,000,000	320,000
37	20260512	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7 101동 503호 (양정동)	0%	20260501	20270430	90,000,000	0
38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5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119	20280118	90,000,000	
39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1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5	20280314	100,000,000	
40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506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05	20280204	100,000,000	
4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1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19	20280418	90,000,000	
4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4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14	20280213	90,000,000	
4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3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28	20280227	100,000,000	
44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0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9	20280318	100,000,000	
45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1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13	20271202	68,250,000	127,000
46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9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8	20280317	90,000,000	
47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6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29	20280328	90,000,000	
48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10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07	20271206	100,000,000	
49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3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19	20280218	71,500,000	
50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501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323	20280322	88,000,000	
5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3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27	20280226	90,000,000	
5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3동 1004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51215	20271214	88,000,000	
5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705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28	20280227	99,000,000	
54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502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508	20280507	88,000,000	
55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2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18	20280317	100,000,000	
56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105호 (상안동, 프리드)	-16.67%	20251229	20271228	100,000,000	
57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302호 (상안동, 프리드)	4.66%	20260329	20280328	75,000,000	
58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8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01	20280331	110,000,000	
59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8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15	20271214	100,000,000	
60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6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51228	20271227	82,680,000	
61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403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210	20280209	100,000,000	
62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303호 (상안동, 프리드)	4.76%	20260228	20280228	88,000,000	
63	20260417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2동 202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418	20280417	90,000,000	
64	20260414	울산광역시 북구 동생10길 14 주간축물제1동 302호실 (화봉동)	0%	20260201	20270131	3,000,000	270,000
65	2026041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7길 5 203호실 (양정동)	0%	20260205	20280204	3,000,000	270,000
66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1203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팬테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30	20271024	295,000,000	90,000
67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5동 15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팬테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30	20271024	295,000,000	90,000
68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04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팬테리움그린테라스2차)	2.57%	20260330	20271024	295,000,000	90,000
69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4동 2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팬테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303	20271024	318,000,000	110,000
70	2026041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3로 55 201동 2001호 (송정동, 울산송정금강팬테리움그린테라스2차)	2.36%	20260324	20271024	318,000,000	110,000
71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905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30	20280329	110,000,000	
72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7길 35 301실 (명춘동)	1.22%	20251229	20271228	3,000,000	300,000
73	20260409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7길 35 202실 (명춘동)	0%	20260124	20280123	3,000,000	300,000
74	20260408	울산광역시 북구 명춘7길 35 201실 (명춘동)	1.81%	20251230	20271229	3,000,000	200,000
75	20260408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로 78-1 101동 404호 (상안동, 프리드)	0%	20260320	20280319	90,000,00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58호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홍진산업기계(주) 채전식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단지길 57-25		
점용 위치	○ 매곡동 887-2 (매곡산업6길 38) 인접도로	노선명	○ 소1-78
점용 목적	○ 전기관로 매설	점용 면적	○ L = 28.0m ○ A(일시) = 42.0㎡ ○ A(계속) = 2.8㎡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7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72호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하천 및 소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1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1. ~ 2026. 8. 25.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고내용

위치	하천명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붙임참조)	동천 외 5개	불법점용	20,120㎡	원상회복 및 철거
	하천(127개소)			
	마동천 외 2개 소하천(11개소)			

6. 유의사항

가. 하천 및 소하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2026. 9. 10.(목)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배상(보상)책임이 없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시행 시 대집행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84)

제2026-107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674호로 귀하의 국유지 내 불법 점·사용행위에 대해서 2026년 6월 4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9월 10일(목)**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소하천정비법」 제16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하천명	불법행위	면적	대집행 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붙임참조)	동천 외 5개 하천(127개소)	불법점용	20,120㎡	원상회복 및 철거
	마동천 외 2개 소하천(11개소)			

2026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번 호	시·도	시·군·구	위 치	하천명	하천 분류	원인자	관리카드연번	점유내용	면적(m ²)		
									경작	가설건축물	적치물(물탱크)
1	울산	북구	신천동 382-2~ 718-5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2	무단경작 등	6627.868		
2	울산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4	무단경작 등	43.906	56.746	2,208
3	울산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5	무단경작 등	142.03	14,052	
4	울산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6	무단경작 등	46.347	5.2	
5	울산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7	무단경작 등	36.861	35	
6	울산	북구	진장동 11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8	무단경작 등	38.589	18.342	
7	울산	북구	진장동 34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09	무단경작 등	61.633	28.282	
8	울산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0	무단경작 등		24	
9	울산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1	무단경작 등	32.321		
10	울산	북구	진장동 9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2	무단경작 등		2,157	
11	울산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3	무단경작 등	439.164		
12	울산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5	무단경작 등	48.064		
13	울산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6	무단경작 등	8.075		
14	울산	북구	진장동 10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7	무단경작 등		2.38	
15	울산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8	무단경작 등	38.044		
16	울산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19	무단경작 등	112.101		
17	울산	북구	진장동 85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1	무단경작 등		6.264	
18	울산	북구	진장동 1047-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2	무단경작 등		11.404	
19	울산	북구	진장동 8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3	무단경작 등		65.241	
20	울산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7	무단경작 등	34.073	2	
21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8	무단경작 등		7	
22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29	무단경작 등		7	
23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0	무단경작 등	486	3	
24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1	무단경작 등		10.929	
25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2	무단경작 등		5	
26	울산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4	무단경작 등	11.296		
27	울산	북구	화봉동 117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5	무단경작 등	43.148		
28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6	무단경작 등		9.604	2,208
29	울산	북구	화봉동 1183-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7	무단경작 등	40.099	2.664	
30	울산	북구	화봉동 1179-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8	무단경작 등	55.952	2.009	
31	울산	북구	화봉동 1179-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39	무단경작 등	10.653		
32	울산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0	무단경작 등	48.69	1	
33	울산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1	무단경작 등	28.864	1	
34	울산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2	무단경작 등	80.878		
35	울산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3	무단경작 등	32.289	7	
36	울산	북구	화봉동 132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4	무단경작 등	12.098		
37	울산	북구	화봉동 1096-15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7	무단경작 등	5	1	
38	울산	북구	화봉동 1091-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8	무단경작 등		1	
39	울산	북구	화봉동 1328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49	무단경작 등	89.911	2	
40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0	무단경작 등	173.567	7	
41	울산	북구	송정동 112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1	무단경작 등	47.841	1	
42	울산	북구	송정동 112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2	무단경작 등	124.848	28.044	
43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3	무단경작 등		26.393	2,208
44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4	무단경작 등	70.994		
45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5	무단경작 등	141.412		
46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6	무단경작 등	335.23	17	
47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7	무단경작 등	63.365		
48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8	무단경작 등	3.686		
49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59	무단경작 등	5.616		
50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0	무단경작 등	4.913		
51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1	무단경작 등	26.816		2,208
52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2	무단경작 등	14.738		
53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3	무단경작 등	165.695	4.1	
54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4	무단경작 등	81.957		
55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5	무단경작 등		2,252	
56	울산	북구	시례동 608-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6	무단경작 등	158.204		
57	울산	북구	시례동 608-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7	무단경작 등	257.2		
58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8	무단경작 등	4.44		
59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69	무단경작 등	40.723		
60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0	무단경작 등	52.418		
61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1	무단경작 등	23.688	6.592	
62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3	무단경작 등	158.754	2.937	
63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4	무단경작 등	160		4,416
64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5	무단경작 등	100		
65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6	무단경작 등	129		
66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8	무단경작 등	250.8	40	
67	울산	북구	시례동 261-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79	무단경작 등	32	12	
68	울산	북구	시례동 261-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0	무단경작 등	40		
69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1	무단경작 등	33.411		
70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2	무단경작 등	100.568	3	
71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3	무단경작 등	51.124		
72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4	무단경작 등	23.333		
73	울산	북구	송정동 11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5	무단경작 등	42.3		
74	울산	북구	시례동 608-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6	무단경작 등	386		
75	울산	북구	창평동 1138-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8	무단경작 등	11		
76	울산	북구	호계동 780-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89	무단경작 등	115		
77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1	무단경작 등	115.052	22.433	
78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2	무단경작 등	218.368		
79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3	무단경작 등	227.44		
80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4	무단경작 등	134.772		

81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5	무단경작 등		22.176	
82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7	무단경작 등	163.671		
83	울산	북구	호계동 943-10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8	무단경작 등	101.484	34.53	
84	울산	북구	호계동 943-3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099	무단경작 등	44.491		
85	울산	북구	호계동 943-3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0	무단경작 등	20.944		
86	울산	북구	호계동 943-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1	무단경작 등	9.356		
87	울산	북구	호계동 210-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2	무단경작 등	10		
88	울산	북구	호계동 943-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3	무단경작 등	140.271		
89	울산	북구	호계동 943-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4	무단경작 등	151.794		
90	울산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5	무단경작 등		30.704	
91	울산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6	무단경작 등	22.016		
92	울산	북구	신천동 745-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7	무단경작 등	28.422		
93	울산	북구	신천동 383-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09	무단경작 등	10.349		
94	울산	북구	신천동 776-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3	무단경작 등	186.984		
95	울산	북구	중산동 1178-54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4	무단경작 등	374.183		
96	울산	북구	중산동 1015-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5	무단경작 등	17.192		
97	울산	북구	중산동 1104-26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6	무단경작 등	20.46		
98	울산	북구	중산동 1166-29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8	무단경작 등	10		
99	울산	북구	중산동 1166-1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19	무단경작 등	37.679		
100	울산	북구	중산동 1166-29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0	무단경작 등	54		
101	울산	북구	천곡동 86-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1	무단경작 등	161.846		
102	울산	북구	중산동 12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2	무단경작 등	36.012		
103	울산	북구	중산동 123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3	무단경작 등	191.83	34.267	
104	울산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4	무단경작 등	41.682		
105	울산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5	무단경작 등	78.1		
106	울산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6	무단경작 등	121.169		
107	울산	북구	천곡동 1032-2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7	무단경작 등	43.31		
108	울산	북구	중산동 1166-17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28	무단경작 등		2.128	
109	울산	북구	천곡동 1020-1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31	무단경작 등	72.062		
110	울산	북구	천곡동 1149-3	동천	지방하천	미상	동천-132	무단경작 등		2	
111	울산	북구	매곡동 394-1	매곡천	지방하천	미상	매곡천-1	무단경작 등		260	
112	울산	북구	달천동 892-30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상안천-4	무단경작 등	240.143	37.824	
113	울산	북구	달천동 892-30~43	상안천	지방하천	미상	상안천-5	무단경작 등	1819.049	63.361	
114	울산	북구	시례동 640-1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시례천-004	무단경작 등	35.99		
115	울산	북구	가대동 908-1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시례천-007	무단경작 등	194.22		
116	울산	북구	창현동 572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시례천-011	무단경작 등			19.35
117	울산	북구	가대동 95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시례천-012	무단경작 등	91.2		
118	울산	북구	가대동 955	시례천	지방하천	미상	시례천-013	무단경작 등	72.56		
119	울산	북구	창평동 1292-26	창평천	지방하천	미상	창평천-2	무단경작 등		53.66	
120	울산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3	무단경작 등		8.305	
121	울산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4	무단경작 등			1
122	울산	북구	호계동 93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5	무단경작 등		28.458	
123	울산	북구	호계동 936-144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6	무단경작 등		73.751	
124	울산	북구	호계동 936-339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7	무단경작 등			83.775
125	울산	북구	호계동 936-266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8	무단경작 등			1
126	울산	북구	호계동 936-2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09	무단경작 등		54.237	
127	울산	북구	호계동 936-261	호계천	지방하천	미상	호계천-010	무단경작 등		13.53	
128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1	무단경작 등	69.83		
129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2	무단경작 등	89.07		
130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4	무단경작 등	210.39		
131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5	무단경작 등	200.5		
132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7	무단경작 등	30.64		
133	울산	북구	매곡동 195-173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08	무단경작 등	187.93		
134	울산	북구	매곡동 795-347	마동천	소하천	미상	마동천-010	무단경작 등	407.93		
135	울산	북구	중산동 산67-1	중산천	소하천	미상	중산천-1	무단경작 등		24.22	
136	울산	북구	중산동 1159-10	중산천	소하천	미상	중산천-2	무단경작 등	30.32	0	
137	울산	북구	송정동 1391	화봉천	소하천	미상	화봉천-1	무단경작 등	89.83		
138	울산	북구	송정동 1391	화봉천	소하천	미상	화봉천-2	무단경작 등	55.15		

18754.286

1247.176

118.37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85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관리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599-1번지 외 2필지
2. 공고기간 : 2026. 8. 12. ~ 8. 26.(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록일자	비고
울산 북구 대안동	599-1	전	1,302	변용환 외 3인	2026. 8. 12.	
	산91-2	임야	205	김성우		
	산94	임야	1,983	윤영훈		

※ 등록사항 정정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3)으로 문의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86호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관리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85-1번지 외 1필지
2. 공고기간 : 2026. 8. 12. ~ 8. 26.(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등록일자	비고
울산 북구 달천동	산85-1	임야	13,388	김후곤	2026. 8. 12.	
	산85-3	임야	9,124	이현우		

※ 등록사항 정정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

5. 기타 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3)으로 문의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관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를 알 수 없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소유자 주소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8. 26.(15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사유	비고
울산 북구 대안동	산91-2	임야	205	김성우	주소 불명	

5. 기타 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지적담당(☎052-241-7583)으로 문의바랍니다.